사실혼 출생자 인지 및 신고 관련 법령

[민법] 제781조(자의 성과 본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 · 제5항 발췌

⑤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0조(인지의 소급효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.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민법] 제863조(인지청구의 소)

법률 제21454호 · 2026. 3. 17. 시행

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

[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] 제58조(재판에 의한 인지)

법률 제21857호 · 2026. 10. 2. 시행

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